

토지이용처리요령폐지요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 10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 100호

서울특별시

☎ 100-711 서울 중구 (영등포)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영무 11010-1329
발행일자: 1994. 8. 27
(제 1 안)
제 목: 영무 폐지
발행처: 서울특별시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연결		
영무 담당관	홍		
법제 과장	김		
기안	이종범		

제 목: 서울특별시 토지이용처리요령폐지요령발령

1. 서울특별시 토지이용처리요령폐지요령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 하고자 합니다.

예규 제 592 호

첨부: 예규안 1부, 끝.

(제 2 안)
주 기: 영무 100호
제 목: 시보 게재

1. 서울특별시 토지이용처리요령폐지요령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예규 제 592 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주 기: 기획과장
제 목: 예규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 토지이용처리요령폐지요령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하였으니
경우에 참고바람.

가. 발령예정일: 1994. 8. 30.



첨부: 서울특별시예규 제 592 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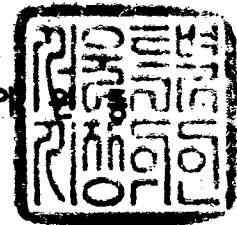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토지이동처리요령제정요령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 94 년 8 월 30 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토지이용처리요령폐지요령(안)

1. 폐지사유 : 지적관계 상위법규 및 타법규의 정비, 개정등으로 중복규제 또는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규제근거 및 실효성이 없을

2. 주요골자

- 지적측량대행법인이 분할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부지연장의 통로면적을 대지면적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
- 전·답·임야인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기준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허가 절차없이 처리가능토록 한 규정
-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경우 토지합병을 금지한 규정
-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대지이외의 지목을 대지로 지목변경처리할 경우 면적기준을 정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내무부예규, 도시계획법령, 건축법령, 건설부령,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공개념관련법령 및 주차장법 등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조회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예규 제 69호

서울특별시토지이등처리요령폐지요령안

서울특별시토지이등처리요령(예규 제470호 85.3.2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부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010-1477
 시행일자 1994. 9. 16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급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한
법 제 계 장				김
기안	이종범	별조		

제목 서울특별시농지전용조정심의회원회규정폐지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농지전용조정심의회원회규정폐지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예규 제 593 호

첨부 : 예규안 1부, 끝.

(제 2 안)

수 신 : 공보1담당관

제 목 :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농지전용조정심의회원회규정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2부, 끝.

(제 3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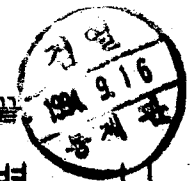
수 신 : 농수산유통과장

제 목 : 예규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농지전용조정심의회원회규정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4. 9. 26

첨부 :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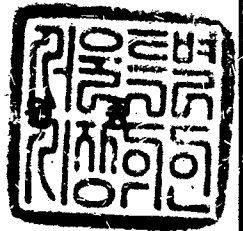
(기획관리실장 전결)

서울특별시 농기전용조경상목의연회규정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농지전용조정심의회규정폐지규정안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농지전용의 협의, 동의, 승인함에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심의회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산업경제국장과 관현국장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제정근거인 "농지전용억제지침을위한준칙"이 개정후 폐지되어 위원회의 주기농인 조정·심의회기능상실로 인하여 본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농지전용억제지침제정을위한준칙 제6조(농림수산부훈령 제61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